

보조견을 환영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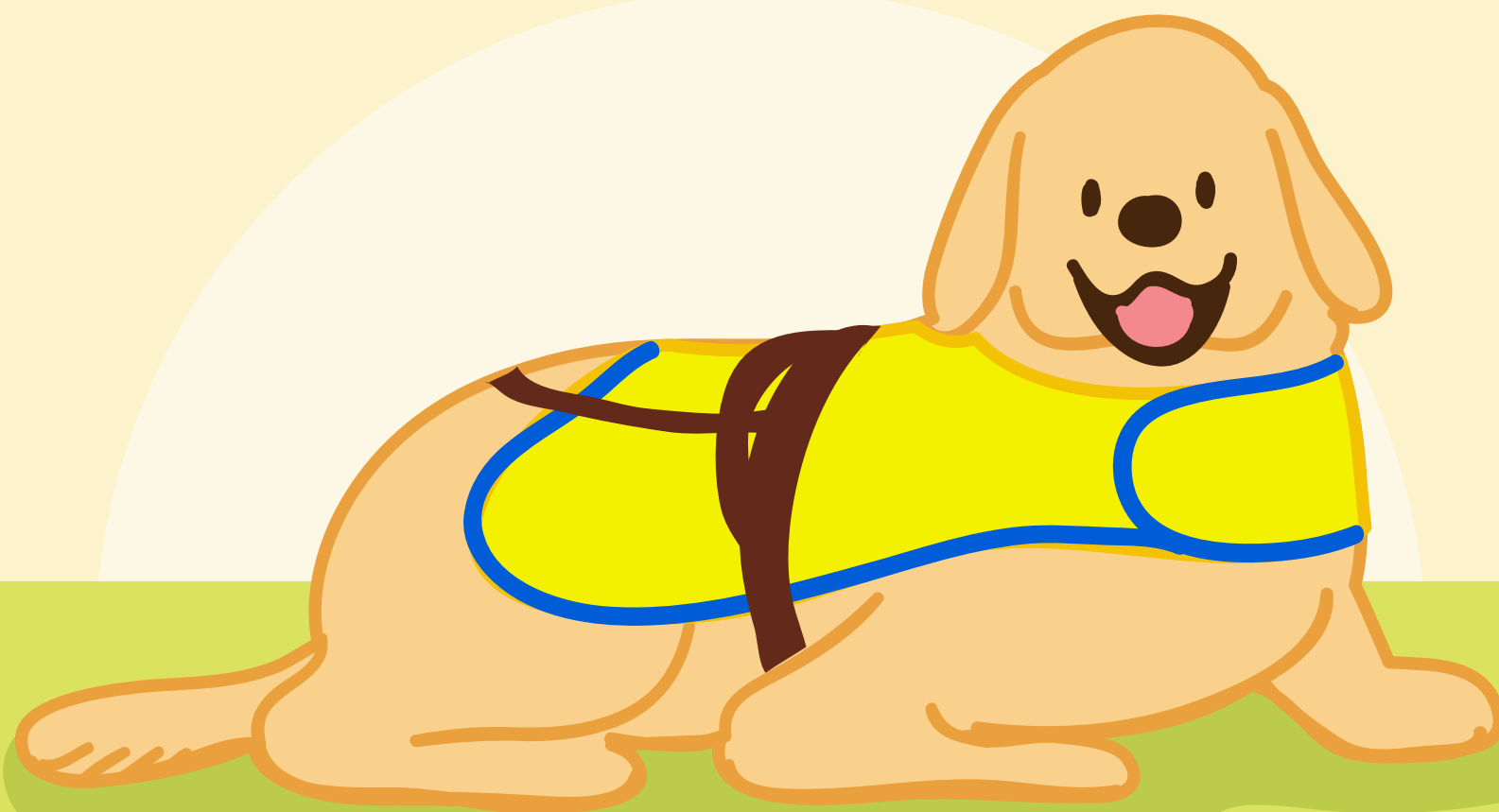


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!



장애인 보조견이란?

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,
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
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



장애인 보조견의 종류

시각장애인보조견*, 청각장애인보조견,
지체장애인보조견, 치료도우미견

*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'안내견'이라 칭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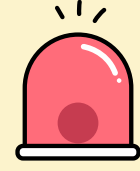
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



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
공공장소에 자유롭게
출입할 수 있으며,
이를 **정당한 사유 없이**
거부할 수 없습니다.
이를 **위반하는 경우**
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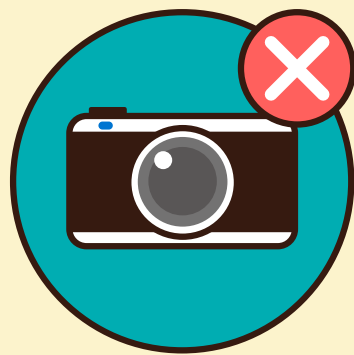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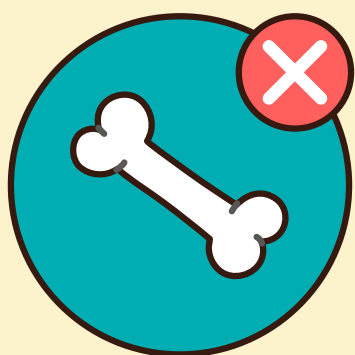
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, 제90조 제3항제3호





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

- ✓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
- ✓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
- ✓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
- ✓ 음식 주지 않기
- ✓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
- ✓ 사진 찍지 않기
- ✓ 보조견 유도 고리(하네스, Harness)를 잡거나 밀지 않기



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
 든든한 동반자, 장애인 보조견을
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
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!

